

I 배 경

- 반부패·청렴의 자율 실천 분위기 조성 and 청렴의 생활화
-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교직원의 관심도 환기 및 이해 증진
- 전년에 이은 지속적 실시를 통한 학내 청렴문화 정착 및 청렴의식 함양

II 개 요

- 주요계획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운영
 - 교직원 관심 제고를 위한 「청렴도 자가진단」 시행
 - 현장 중심의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반부패 청렴의날 지정
 - 매월 넷째주 목요일(2014년 9월부터 시행 중)

III 추진계획

-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운영

○ 주요내용	- 매월 행동강령 주요 조항을 선정하여 내용 해설, 사례, 주요 사항 질의회신 등을 소개 [붙임1 참조]
○ 운영방법	- e-mail 발송
○ 시행시기	- 매월 넷째주 목요일
○ 대상	- 전 교직원

□ 「청렴도 자가진단」 시행

○ 주요내용	- 개인별 청렴도를 스스로 진단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토록 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 제고
○ 운영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https://www.acrc.go.kr/edu/index.do) → 공부방 → 청렴도 자가진단 [붙임2 참조]
○ 시행시기	- 1회/3개월(3월, 6월, 9월, 12월) - 분기별 넷째주 목요일(「행동강령 바르게 알기」와 함께 시행)
○ 대상	- 전 교직원

□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 주요내용	-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현장 중심의 반부패·청렴교육(행동강령 교육 포함) 실시
○ 운영방법	- 월례특강시 전 직원대상 교육(연건캠퍼스, 그린바이오, 용대원, 학술림 등은 실시간 중계 예정)
○ 시행시기	- 1회/년 2시간 이상
○ 대상	- 전 직원(추후 전 교직원으로 확대)

IV 기대효과

□ 기대효과

-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자발적 참여와 실천의식을 고취
- 각 개인의 청렴도를 스스로 점검함으로써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청렴행정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 제고
- 전문화된 청렴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의 조기 정착 유도

- ※ 붙임 1.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예시) 1부
2. 청렴도 자가진단 Test 1부

[붙임1]

* (예시)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①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의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2조)'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교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내용 해설>

- 자신의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해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

<위반 사례>

- ①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 등에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여 화환을 보내는 행위
- ② 「도로교통법」 위반 시 경찰에게 처분의 경감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소속 기관 또는 직위를 이용하는 행위

<위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

- ① 경조사 봉투 및 화환에 소속 기관 및 직위를 기재
- ②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설 때 소속 기관 명칭과 직위의 기입
- ③ 단체의 회원가입 등 (이 경우도 일반인에게 열람·공표되는 경우는 금지)
- ④ 직무활동 또는 소속 기관의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단체, 업소 등의 방문 시 촬영한 사진이나 사인, 액자, 기타 이에 준하는 기념물의 전시
- ⑤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기관 대표자격으로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는 행위



주요 질의회신

A기관의 기관장이 관내 B기관의 연구소 창설일에 기관명의를 화환을 보내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여부

교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 대표자격으로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는 행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님

교직원 甲이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며, 축의금 봉투에 소속 기관 및 직위를 기재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여부

교직원이 경조사 등의 축·부의금 봉투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사용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님



사건사례

모 중앙부처 A국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단법인 협회 관계자 B로부터 당해 협회가 개최하는 미술대회에 위 중앙부처가 협찬하는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기 기관에서 마치 위 대회를 협찬하는 것처럼 현수막 등 광고물에 자신의 기관명을 사용토록 하여 많은 학생들이 위 대회의 공신력을 믿고 참가하도록 유도

공무원(교직원)이 특정인의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공무원(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위반임

[붙임2]

청렴도 자가진단 Test

* 아래 항목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TV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부패에 연루된 정치가나 기업인들의 모습을 볼 때, 저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예 ② 아니오
2. 현대사회에서 돈은 성의의 표시이자 마음이기 때문에 업무상일 경우에 10만원 이하의 돈은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① 예 ② 아니오
3. 특별한 대가나 혜택을 주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대나 향응을 받은 적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4. 명절에 업체에서 주는 돈이나 선물은 금액이 크지만 많다면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① 예 ② 아니오
5. 쇼핑 중 마음에 든 물건을 보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가방에는 마침, 동호회비를 걷은 돈이 있다. 이 경우 일단 회비로 쇼핑을 한 후 내일 현금을 채워두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① 예 ② 아니오
6. 친구나 선배 등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남에게 일처리를 잘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7. 부패한 행위는 발각되는 경우보다 발각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된다.
① 예 ② 아니오
8. 부패행위로 인해 체포되더라도 실제로 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한다.
① 예 ② 아니오
9. 우리사회에서는 양심을 지키고 살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한다.
① 예 ② 아니오
10. 민원업무를 진행할 때 아는 사람을 통한 부탁이나 뇌물은 일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① 예 ② 아니오

[결과]

- A타입[아니오 7개이상] : 매우 청렴한 사람
- B타입[아니오 5개이상] : 청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사람
- C타입[아니오 3개이상] : 부패에 쉽게 현혹되는 사람
- D타입[아니오 2개이상] : 부패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사람